

투자권유준칙

제정: 2019.08.01

전면개정: 2022.11.07

개정: 2024.04.15

제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 (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가.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나.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7조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정보

제8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절차에 따른다. [별지 제4호]
- ⑤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그 확인서의 취지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가.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나.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⑤ 임직원등은 금소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①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판단 기준과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 ② 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가.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 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이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등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투자권유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

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본다.
 - (1)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가)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다. 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른 유형의 금융투자상품으로 본다.
 - (가) 기초자산의 종류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 (나) 선도, 스왑, 옵션 등 금융투자상품의 구조가 다른 장외파생상품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는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9. 투자자가 법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11. 금소법 제17조를 적용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12.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 등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설명 의무)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가. 투자자: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나. 임직원등: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 ④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⑤ 임직원등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가.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 세제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

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시장상황 등의 특징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법령에서 규정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지 제5호]와 같이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개정 2024.04.15>
1. 기초자산의 변동성
 2. 신용등급
 3. 상품구조의 복잡성
 4.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
 5. 환매·매매의 용이성
 6. 환율의 변동성
 7. 그 밖에 원금손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

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 ⑤ 위험등급은 최소 6단계 이상으로 구분하고, 1등급을 가장 높은 위험으로 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은 [별지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4.04.15>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의1(계약서류의 교부)

-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조의2(청약의 철회)

-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금소법제23조에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 체결일

- ① -1.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약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 2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② -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재화·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조의3(위법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나.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 ② 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라.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2)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마.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경우

-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나.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다.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가.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 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다.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 마.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사.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사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자.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카.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타. 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1)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가.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다.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일임재산이 위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1조(투자일임에 대한 특칙)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조사하여 투자자

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2.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2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법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자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 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11월 7일부터 전면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일반금융소비자)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정보 미제공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등록정보 구분

신규(또는 정보변경) 기존정보와 동일 (유예기간 연장)

➤ 투자권유 희망: 고객정보 제공

➤ 투자권유 불원: 고객정보 제공 고객정보 미제공

※ 투자권유 미희망 고객께서는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확인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정보 항목

PART 1		배점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법인인 경우 생략)	① 만 19세 이하 ② 만 20세 ~ 34세 ③ 만 35세 ~ 49세 ④ 만 50세 ~ 64세 ⑤ 만 65세 이상	
2. 고객님의 월소득은?	① 100만원 이하 ② 100만원 ~ 3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 5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⑤ 1,000만원 초과	
3. 향후 고객님의 수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4. 고객님의 순자산규모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억 이하 ② 1억 ~ 3억 이하 ③ 3억 ~ 10억 이하 ④ 10억 ~ 30억 이하 ⑤ 30억 초과 	
5. 고객님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 이하 ② 20% ~ 40% 이하 ③ 40% ~ 60% 이하 ④ 60% ~ 80% 이하 ⑤ 80% 초과 	
6. 고객님의께서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투자 상품은? (복수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7. 고객님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정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②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③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및 펀드 등)을 깊이있게 이해하고 있음 ④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8. 고객님의 투자수익과 위험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② 손실이 있더라도 30%이상의 수익을 추구 ③ 손실이 있더라도 15%이상의 수익을 추구 ④ 투자수익보다 원금보존이 더 중요함 <p>※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p>	

9. 고객님의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① 원금기준 -10% ② 원금기준 -20% ③ 원금기준 -30% ④ 원금기준 -40% ⑤ 원금기준 -50%	
10. 고객님의 투자 예정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④ 4년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투자자정보 확인

본인은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귀사에 제공한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2. 향후 24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자정보를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4. 본인은 취약투자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취약 투자자: 고령, 미성년투자자, 금융상품투자경험이 없는 분으로 금융상품 투자시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고객명: (인 또는 서명)

■ 대리인 기재 (위임장 겸용)

본인은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성명: 서명/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위임사항

[별지 제2호]

투자자성향 분석결과 확인서

▶ 성함 () 고객님의 고객 성향은 ()입니다.

▣ 고객정보 확인 결과 분석

질문	분석	배점
고객님의 연령:		
고객님의 월소득:		
고객님의 향후 수입원 예상:		
고객님의 순자산규모: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전체 금융자산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고객님의 투자경험 유무:		
고객님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정도:		
고객님의 투자수익과 위험에 대한 태도: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		
고객님의 투자예정기간		
취약 금융소비자여부 확인	YES () / NO ()	

Guide 1번부터 10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55)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10번까지의 합이 30점인 경우 : 30점/55점 x 100점 = 54.5점

▣ 투자성향 분류: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점수	투자성향
20점 이하	안정형
20점 초과 ~ 30점 이하	안정추구형
30점 초과 ~ 50점 이하	위험중립형
50점 초과 ~ 70점 이하	적극투자형
70점 초과	공격투자형

✓ 고객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회사에 보관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적합성 판단 방식

□ 투자자성향 점수화(Scoring) 방식

▪ 투자자정보 확인서의 각 정보항목 질문에 대한 투자자의 답변을 점수화하고, 이 점수들의 총합을 해당 투자자의 투자성향으로 확정하여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파악된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권유 가능한 위험도의 상품군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적합성 원칙을 적용

□ 문항별 배점 (별지 제1호 배점표)

구분	①	②	③	④	⑤	중복 응답한 경우
1	1	4	3	2	1	
2	1	1	2	3	4	
3	4	2	1			
4	1	2	3	4	5	
5	5	4	3	2	1	
6	1	2	4	6	8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7	1	2	4	6		
8	6	4	2	1		
9	1	2	4	6	8	
10	1	2	3	4	5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55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예) 1번부터 10번까지의 합이 30점인 경우, $30\text{점}/55\text{점} \times 100 = 54.5\text{점}$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단계로 분류

- 70점 초과: 공격투자형
- 50점 초과 ~ 70점 이하: 적극투자형
- 30점 초과 ~ 50점 이하: 위험중립형
- 20점 초과 ~ 30점 이하: 안정추구형
- 20점 이하: 안정형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정보제공여부

동 확인서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투자 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고객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하였습니다.

유의사항

-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자의 권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투자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
 -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따라서, 귀하께서는 투자자 선택사항 중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또는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상기 적합성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확인서에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향후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의 권리구제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귀하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게 적합한 상품을 투자 권유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

본인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하며,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 46 조제 2 항(투자자정보 파악) 및 제 3 항(적합성 원칙)에 따른 의무를 귀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고객명(대리인):

서명/인

■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확인(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거래확인)

본인의 투자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투자권유한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고자 하며, 귀사로부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고객명(대리인):

서명/인

■ 대리인 기재 (위임장 겸용)

본인은 위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인성명: _____ 서명/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	위임사항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2024.04.15개정

■ 집합투자증권 : 투자대상의 종류 및 위험도(설정 3년 미만 펀드)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레버리지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①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4.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

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음.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님
6. 상기 분류에 따른 동일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편입자산의 구체적인 운용내용에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위험등급을 달리 분류할 수 있음
7. 필요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출시 이후부터 등급산정 기준일까지의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을 토대로 <표1>에 따른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표 1> 시장위험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 등급 (고위험)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저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 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한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라고 하더라도 수익구조 등이 특수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부여할 수 있음,

■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 금융투자상품 별 투자위험도

구분	매우 높은 위험	높은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 낮은 위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채권	투기등급 회사채 (BB+이하)			회사채 (BBB+~BBB-)	금융채, 회사채(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파생 결합 증권	ELS/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ETF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일반주식, 공모주식	헷지된주식형		
ETF	레버리지ETF		인덱스 ETF			
파생상품	선물/옵션	선물(헷지에 한함), 옵션매수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제 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투자자문·일임계약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투자자"란 65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2. "초고령투자자"란 80세 이상 투자자를 말한다.
3. "조력자"란 초고령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는 65세 미만의 가족, 후견인 등을 말한다.
4.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가. 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 나. 기억을 잃어버린 듯한 외관을 보이는 경우
 - 다.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 라.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 마. 행동이 불안정한 경우
 - 바. 기존의 투자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투자자문을 거절하는 경우
 - 사. 자금이동이 전혀 없는 계좌에서 자금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 아. 최근의 금융거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자. 사회적 관계, 주변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 차. 평소답지 않게 용모가 단정하지 않거나 건망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3조(전담부서)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판매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제4조(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투자권유 유의상품"은 고위험등급 이상 상품 중 파생상품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구조화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및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5조(고령투자자 판매절차 교육)

준법감시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이 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불완전판매 점검)

준법감시부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가. 투자금액 대비 수수료 비중이 높은 계좌

나. 최근 대리인 등이 지정·변경된 계좌 중 투자활동 패턴에 변경이 있는 계좌

제7조(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초)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은 조력자의 동의를 받아 (초)고령투자자로 하여금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조력자이 연락처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8조(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

임직원은 (초)고령투자자를 주요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고령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과장정보, 투자광고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상담내용 등의 기록·유지)

판매 직원 또는 관리직 직원은 초고령투자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